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의 법제 현황 및 시사점

I. 서론

II.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III.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법제 체계

IV.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법제 체계

V. 정책적인 시사점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2013년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언급되는 ‘주거’, ‘보육’, ‘의료’, ‘교육’에 걸쳐 주요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서론

지금까지 초저출산국가 수준을 보이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2년 잠정치가 1.3명으로 나타나면서 2009년 이후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그러나 국내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7명 그리고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양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EU Demography Report, 2010). 적절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하여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여 온 가장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의 하나가 프랑스이다. 2010년 현재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99명으로서 선진 유럽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은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자유(liberté)”를 부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에 있어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형평성(égalité)”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통합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²⁾

프랑스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 성격을 가진 “가족 수당 정책”과 현물 지원 성격을 가진 “보육 서비스 정책”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족 수당과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사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현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프랑스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에 명시하고 있다. 보육 시설과 보육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 서비스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전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école maternelle)을 중심으로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아 교육에 대한 규정은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는 자녀 수를 고려하여 조세 부과 대상 소득을 책정(Quotient familial)하고 있으며, 보육료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1) 통계청(2013), “201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해당 연도에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2) Laroque, M. (2001). *Guide de la protection sociale*, Dunod, Paris.

러한 사항은 조세 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최근 들어 크게 강화되었다. 2013년부터 전체 0~5세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및 보육 서비스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법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프랑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프랑스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0~2세에 대한 영아 보육 지원과 3~5세에 대한 유아 교육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1).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 지원으로서 취업 여성에 대해 자녀 출산 후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할 때 종일제 시설 보육 서비스(crèch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 보육 서비스 이외에도 개인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혹은 garde à domicile)를 고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종일제 시설 보육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보육사 이용 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 등 보육 서비스는 취업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업 주부는 필요한 경우 자녀를 일시 보육 시설(haltes garderies)에 맡길 수 있다.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3~5세 학령 전 유아들의 98%가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서 유아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유치원이 문을 닫는 수요일이나 유치원 교육 시간 이후에 필요한 경우 부모들은 놀이방(jardins d'enfants)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이러한 보육·교육 서비스 이외 기본적으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가족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 수당은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저소득 계층, 한부모, 장애아 등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가족 수당은 크게 영아를 위한 수당, 다자녀 가족 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기타 취약 가족 수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2).

비교법 현안분석

〈표 1〉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 현황(2010)

(단위: 10억 유로)

구 분	0~2세	3~5세	합 계
육아휴직수당	3,261.29(24.4%)	-	3,261.29
개인 보육사	4,284.84(32.1%)	1,013.93(7%)	5,298.77
인가된 보육사	4,011.55	899.30	4,910.85
가정 내 보육사	216.94	82.88	299.82
보육시설 보육사	56.35	33.52	89.87
보육시설	4,213.91(31.5%)	154.20(1%) ¹⁾	4,368.11
시설 운영비	3,237.29	-	3,237.29
집단 어린이집	1,250.47	-	1,250.47
가족 어린이집	181.64	-	181.64
부모협동어린이집	25.17	-	25.17
소규모보육시설	6.70	-	6.70
지자체운영비 지출	1,751.69	-	1,751.69
시설 투자비	346.46	-	346.46
기타 비용	630.16	154.20	784.36
유치원	563.84(4.2%)	12,257.76(90%)	12,821.60
교육부	301.89	6,563.00	6,864.89
지자체	261.95	5,694.77	5,956.72
세제상 혜택	1,038.03(7.8%)	244.94(2%)	1,282.97
합 계	13,361.91	13,670.83	27,032.74

주: 1. 방과 후 학교에 해당하는 “Accueil de loisirs” 이용에 대한 지원
 자료: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2011년 현재 프랑스 25~4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출산한 취업 여성들은 산전후 휴가 기간을 보낸 이후에 직장으로 돌아가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다.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육료를 지불하며, 개인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 자녀 연령, 이용하는 보육사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인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을 지원 받는다.

육아 휴직을 선택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에 직업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첫째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가 3세가 되기 바로 전 달까지 지급되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프랑스 가족수당금고, 2012).

〈표 2〉 프랑스 가족 수당의 현황(2012년)

구 분	소득제한	급여액	아동 연령	자녀수
영아를 위한 수당				
출생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된 일시불	임신 후 7개월에 일시불	첫째아
기초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0~2세	첫째아
보육사 이용 지원금 ¹	근로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수준과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0~6세	첫째아
육아휴직수당 ²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보험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파트 타임 정도에 따라 차등	출생 후 6개월간 지급	첫째아
다자녀 가족 수당				
가족 수당	소득제한 없음	자녀수에 따라 차등 16세 이상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	0~20세	둘째아 이상
가족 보조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연금 보험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연금 보험 개인 부담금 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족 수당				
가족 부양 수당	소득제한 없음	부모 1명 혹은 2명이 번갈아 돌보는가에 따라 차등(부모 2명이 번갈아 돌보는 경우 더 높게 지급)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첫째아
부양료 징수 지원	소득제한 없음	개인마다 차등	0~18세	첫째아
취약 가족 수당				
장애아 교육 수당	소득제한 없음	고정액	0~20세	첫째아
성인 장애자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부모 본인 연령 60세까지	-
자녀 간호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한부모 혹은 양부모에 따라 차등(한부모에게 더 높게 지급)	한 달에 22일, 총 3년간 310일 한도의 휴가	첫째아
개학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6~18세	첫째아

주: 1. 보육사이용지원금은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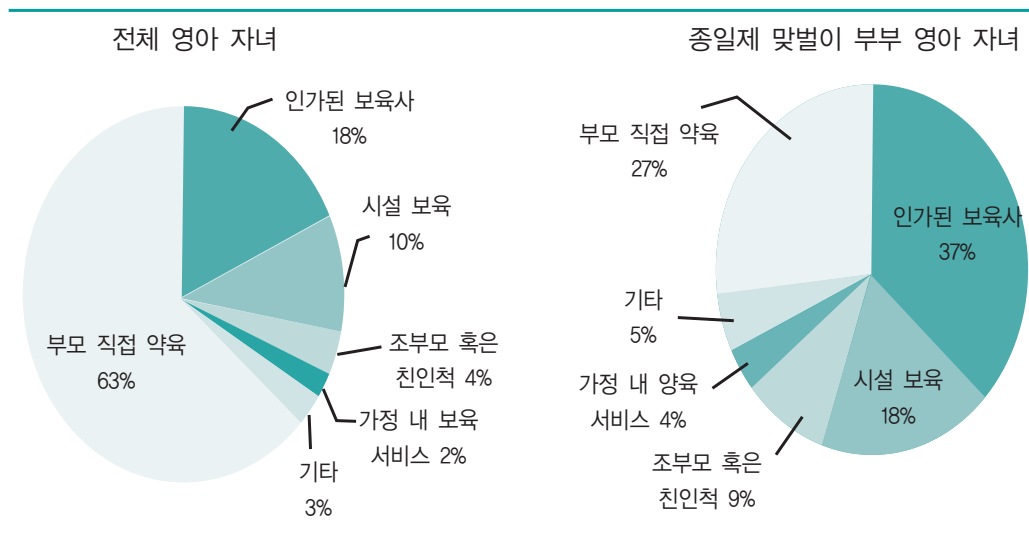
2. 육아휴직수당은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2), Toutes les prestations(<http://www.caf.fr>)에서 재구성

비교법 현안분석

2007년도 프랑스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프랑스 0~2세 영아의 주중 낮 시간 동안 주된 보육 방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전체 영아 자녀의 경우 주중 낮 시간 동안의 주된 돌봄자는 부모(63%), 인가된 보육사(18%), 시설보육(10%), 조부모 혹은 친인척(4%), 가정 내 보육 서비스(2%), 기타(3%)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맞벌이 부부 영아 자녀의 주중 낮 시간 동안 주된 돌봄자는 인가된 보육사(37%), 부모(27%), 시설보육(18%), 조부모 혹은 친인척(9%), 가정 내 보육 서비스(4%), 기타(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가된 보육사”에 의한 보육이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 이용은 전체 영아의 경우 10%, 종일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로서 이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림 1〉 프랑스 영아(0~2세) 낮 시간 주된 보육 방식(2007)



주: DREES(2007) Enqu 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의 주요 결과임.
 자료: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Ⅲ.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법제 체계

프랑스에서 가족 수당과 보육사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에 대한 사항은 사회보장법(Code de la securité)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보육 시설과 개인 보육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서

규정하고 있다.³⁾

사회보장법은 프랑스 사회 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령이다. 사회보장법에서는 프랑스 사회 보장의 주요 4대 영역인 질병, 고령, 근로자 상해, 가족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프랑스 사회 보장의 다양한 체계(régime)를 함께 아우르고 있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체계(régime général)에 적용되는 규정 뿐만 아니라 비 임금근로자 체계 그리고 기타 집단의 체계에 적용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가족 수당과 관련한 조항은 제5권(Livre 5)에 수록되어 있으며, 영아 자녀 보육을 위해 고용하는 보육사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8권(Livre 8)에 나와 있다.⁴⁾

가족 수당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사회보장법 “제5권: 가족 수당 및 유사한 수당”은 가족 수당의 적용 범위와 공통적인 규정 등 가족 수당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내용과 함께 가족 부양을 위한 수당, 영아 보육을 위한 수당, 특별한 수당 등 각각의 유형별 가족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Titre)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1부: 적용 범위”에서는 1장: 수당의 종류, 2장: 적용 범위, 3장: 수당의 규칙과 지급 등 전체적인 가족 수당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2부: 가족 부양을 위한 수당”에서는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당인 1장: 가족 수당, 2장: 가족 보조금, 3장: 가족 부양 수당, 4장: 한부모 수당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3부: 영아 보육을 위한 수당”에서는 영아 보육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1장: 영아 보육 수당 관련 규정, 2장: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과 관련한 규정, 3장: 엄마와 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과 관련한 규정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 특별하게 할당된 수당”은 특별한 유형에 해당하는 가족 수당인 1장: 장애아 교육 수당, 2장: 가족 주거 수당 - 이사 보조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금, 3장: 개학 수당, 4장: 가족 간호 수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5부: 공통적인 규정”에서도 1장: 기초적인 급여의 확립, 2장: 수당 서비스, 3장: 다양한

3)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의 “법”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부분(Partie législative)과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칙적인 부분(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은 “Loi(법령)”이며, 규칙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은 “Décrets(시행령)”라고 부른다.

4) 법률적인 부분과 규칙적인 부분은 하위 체계로 권(Livre)-부(Titre)-장(Chapitre)-절(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인 법 조항(Article)은 장(Chapitre) 혹은 장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Section) 안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 4장: 별칙으로 가족 수당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규정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사를 고용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 사항은 “제 8권: 고령자 수당, 성인 장애인 수당, 사회주거수당,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지원,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시설의 일시적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보육사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4부: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1장: 인가된 보육사 고용을 위한 가족 지원, 2장: 가정 내 보육을 위한 수당, 3장: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 지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가족수당 및 영아 보육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

권(Livre)	부(Titre)	장(Chapitre)	절(Section)	
5. 가족 수당 및 유사한 수당	1. 적용 범위	1. 수당의 종류	Article L511-1	
		2. 적용 범위	Article L512-1 ~ L512-6	
		3. 수당의 규칙과 지급	Article L513-1	
	2. 가족 부양을 위한 수당	1. 가족 수당	Article L521-1 ~ L521-3	
		2. 가족 보조금	Article L522-1 ~ L522-2	
		3. 가족 부양 수당	Article L523-1 ~ L523-3	
		4. 한부모 수당	Article L524-8	
	3. 영아 보육을 위한 수당	1. 영아보육수당 관련 일반 규정	Article L531-1 ~ L531-10	
		2.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과 관련한 규정	Article L532-1 ~ L532-2	
		3. 엄마와 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과 관련한 규정	Article L533-1	
	4. 특별하게 할당된 수당	1. 장애아 교육 수당	Article L541-1 ~ L541-4	
		2. 가족 주거 수당 - 이사 보조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금		Section 1: 일반규정, 적용 범위 (Article L542-1 ~ L542-4)
				Section 2: 급여 관련 일반 조건 (Article L542-5 ~ L542-7)
				Section 3: 임차인 관련 규정 (L542-7-1)
				Section 6: 이사수당(L542-8)
				Section 7: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금(L542-9)

권(Livre)	부(Titre)	장(Chapitre)	절(Section)
5. 가족 수당 및 유사한 수당	4. 특별하게 할당된 수당	3. 개학 수당	Article L543-1 ~ L543-2
		4. 가족 간호 수당	Article L544-1 ~ L544-9
	5. 공통적인 규정	1. 기초적인 급여 확립	Article L551-1
		2. 수당 서비스	Article L552-1 ~ L552-6
		3. 다양한 규정	Article L553-1 ~ L553-5
		4. 벌칙	Article L554-2 ~ L554-4
	8. 부양비 채권 회수	1. 부양비 채권 회수와 관련된 조항	Article L581-1 ~ L581-10
		3. 다양한 규정	Article L583-1 ~ L583-4
		4. 적용 규정	Article L584-1
	8. 고령자 수당, 성인 장애인 수당, 사회주거수당,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시설의 일시적 지원	4.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지원	1. 인가된 보육사 고용을 위한 가족 지원
2. 가정 내 보육을 위한 수당			Article L842-1 ~ 842-4
3.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 지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Article L843-1 ~ 843-3

주: 가족 수당 관련 사항은 2013년 3월 6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법령 내용임.
 자료: 프랑스 공공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http://www.legifrance.gouv.fr/> 2013년 3월 방문

프랑스의 사회서비스법은 가족과 아동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빈곤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자녀 돌봄과 관련한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그리고 사회 부조 차원에서 취약 아동 및 위험 청소년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제1권: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사항인 “제1부: 일반적인 원칙, 제2부: 권한, 제3부: 절차, 제4부: 기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2권: 다양한 유형의 사회 부조와 사회 활동”에서는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자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 가족”에서는 1장: 가족 협회, 2장: 가족에 대한 사회 부조, 3장: 가족 교육 및 상담, 4장: 영아 보육 시설, 5장: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 4장(영아 보육 시설)에서 영아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육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사회서비스법 “제4권: 사회 활동 전문가”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 활동 전문가에는 “제1부: 사회활동 도우미, 제2부: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제3부: 가족 교육자 및 보조자, 청소년 시설 교육사, 생활 시설 직원, 제4부: 고령자와 장애인 특별 자원 봉사자, 제5부: 사회 노동자 단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보육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 제2(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의 하위 항목에서는 1장: 일반적인 규칙, 2장: 공공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3장: 민간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4장: 보육사의 집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법적 규정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3장(민간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보육사에게 적용되는 계약, 보수, 휴가, 표현의 권리 등의 내용을 보다 상세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 프랑스 사회서비스법의 보육 시설 및 개인 보육사 운영에 관한 조항

권(Livre)	부(Titre)	장(Chapitre)	절(Section)
1. 일반적인 규정	1. 일반적인 원칙	2. 가족 정책	Article L112-1 ~ L112-4
2. 다양한 유형의 사회 부조와 사회 활동	1. 가족	4. 영아 보육 시설	Article L214-1 ~ L214-7
4. 사회 활동 전문가	2.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1. 일반적인 규칙	Article L421-1 ~ L421-18
		2. 공공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Article L422-1 ~ L422-8
		3. 민간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1. 공통 규정 1-1. 적용 범위(Article L423-1 ~ L423-2) 1-2. 노동 계약(Article L423-3) 1-3. 보수, 수당, 용품(Article L423-4 ~ L423-5) 1-4. 휴가(Article L423-6 ~ L423-7) 2. 민간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 1-1. 근로 계약(Article L423-8 ~ L423-12) 1-2. 보수(L423-13) 1-3. 휴가(L423-14) 1-4. 표현의 권한 실행(Article L423-15 ~ L423-16) 3. 보육사 1-1. 공통 규정(Article L423-17 ~ L423-22) 1-2. 특별하게 고용된 보육 도우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Article L423-23 ~ L423-27) 1-3. 민간법인이 고용한 보육 도우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Article L423-28)
		4. 보육사의 집	Article L424-1 ~ L424-7

주: 가족 수당 관련 사항은 2013년 3월 6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법령 내용임.

자료: 프랑스 공공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http://www.legifrance.gouv.fr/> 2013년 3월 방문

IV.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법제 체계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 지원은 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최근 0~5세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현금 지원에 해당하는 수당 지원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 수당 그리고 입양 아동 양육 수당,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장애 아동 수당 등 취약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육 서비스는 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유아교육 서비스는 3~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가 보육 서비스로서 종일제 및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법과 사회서비스법을 중심으로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앞서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사회보장법과 사회서비스법에서는 해당 법령의 근본 원칙과 취지하에 영유아 양육 지원 이외에도 노인, 장애인, 취약 계층 등 국가 사회 보장에서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의 각 영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각 영역에 해당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 보육 서비스와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개인 보육사 제도에 해당하는 아이 돌보미 제도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에서 해당되는 법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개별 수당에 대해 서로 다른 법이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 특례법”에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해당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도 프랑스는 학령전 유아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아 교육에 대해서 “유아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는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한 수당 정책과 사회 서비스 지원 정책들을 국가 사

회 보장이라는 큰 틀의 법체계에서 총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수당 정책과 사회 서비스 정책의 기본 원칙하에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된 각각의 수당과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법체계를 가짐으로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서비스와 지원 정책이 개별적인 법령하에서 운영되는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 관계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표 5〉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 법률

구분	정책	관련 법률
보육 서비스	시설 보육 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재가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3), <http://www.law.go.kr/> 2013년 3월 6일 방문

V. 정책적인 시사점

본고에서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법적인 체계를 고찰하였다.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 보다 높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취업 부모와 취약 계층 가정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에 있다 하겠다. 프랑스 국가 사회 보장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양대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법과 사회서비스법에서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 사회 보장의 틀 안에서 영유아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과 법적인 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은 현재의 보육 서비스 중심 지원에서 현금 지원과 휴가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현금 지원과 휴가 지원 정책은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육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과 휴가 지원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보다 큰 정책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역시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현금 수당으로 지원하고,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과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갖도록 하며,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로운 정책 추진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유아 양육 지원이 국가 사회 보장에서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위험에 포함하여 자녀 양육을 국가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유럽 복지 선진 국가의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아동 수당과 부모 보험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국가 사회 보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건강, 노인, 연금 제도와 함께 국가 사회 보장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다른 법령에서 다루고 있어 자녀 양육 지원을 국가적인 지향성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책들을 서로 다른 법령에서 다룰 경우 정책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들 간의 중복성 문제도 야기될 수도 있다.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체계적인 법적인 틀 하에서 운영함으로써 정책과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Laroque, M. (2001). *Guide de la protection sociale*, Dunod, Paris.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프랑스 가족수당금고, www.caf.fr.
 프랑스 공공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 www.legifrance.gouv.fr.